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나21508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나21508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1 선고 2019가단12160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B

2. D

3. E

4. G

5. H

6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

피고, 피항소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로고스

담당변호사 이광진

변론 종결 2021. 6. 17.

판결 선고 2021. 7. 8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1. 선고 2019가단121605 판결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8. 3. 12. 접수 제7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3쪽 제10줄: '증서진부확인)의 소' → '증서진부확인)의 소)
- 제5쪽 제12줄: '약 6억 원' → '408,051,000원'
- 제5쪽 제14줄: '이사건' → '이 사건'
- 제6쪽 제11줄: '소송대리인의' → '소송대리인으로'
- 제8쪽 제5줄: '내강' → '내가'
- 제9쪽 제14줄부터 제1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

을 제1,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F이 이혼한 상태이기는 하나 재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, A는 2014. 5. 13.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 일도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에 비추어 A는 F에게 이 사건 각

부동산을 유증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였다고 하여도, 이를 A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. 앞서 본 법리와 사정을 고려하면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기현

판사김천수

판사안성민

별지